

성매매알선등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김현선(새움터 대표)

1.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의 과정

1) 한국 성매매문제의 심각성

한국은 급속도로 성이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로서 성매매가 보편화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무관심, 효과적 정책의 부재, 관련공무원의 심각한 유착비리 등의 이유로 인해 강제적 성매매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단과 미군의 주둔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대성매매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군대성매매와 섹스관광위주의 관광정책은 국내에 국제적 성매매시장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국제적 성매매현상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성매매는 그 성격이 다양하고, 업소의 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측면에서도 그 규모는 거대하며, 지역적으로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제적 성매매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한국의 남성위주의 문화는 성매매를 당연시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사회의 필요악으로 생각하였고, 성매매문제를 성매매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곤 하였다. 군산화재참사 이전까지 한국정부와 사회는 성매매문제에 철저하게 무관심하였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떠한 지원과 구조도 기대할 수 없는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감금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5명의 여성이 사망하였던 군산화재참사는 한국사회의 성매매의 심각한 실태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성매매여성을 통제하는 거대한 범죄조직, 성매매관련 범죄조직과 관련공무원·경찰공무원의 유착관계, 성매매업소를 통해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득, 직업소개소를 통한 인신매매, 감금과 협박과 같은 성매매여성들을 길들이기 위한 폭력의 심각성 등.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성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주, 중간포주, 감시원, 깡패조직, 성매매업소집결지의 실제경영주, 직업소개소, 인신매매범, 성매매고객, 경찰, 시의 주택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정치인, 지역유지, 병원 등은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성매매으로 내모는 강간범, 아내구타남성, 근친강간의 가해자, 여성을 우선해고하는 기업주 등 이들 모두가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매매와 관련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가 없지만, 외국의 연구조사를 살펴보면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심각한 폭력이며 인권침해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14세이고¹⁾, 적어도 75%의 성매매여성들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들이며²⁾, 90%이상의 성매매여성들이 포주의 통제 하에 있고³⁾, 70%의 성매매여성들이 손님이나 포주, 다른 남성들에 의해 강간을 당해왔고⁴⁾, 성매매여성들은 매주 한 번 꼴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⁵⁾ 캐나다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성매매여성들의 사망률은 무려 40배 이상이다.⁶⁾

한국사회에서도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러한 폭력의 양상은 동일하다. 새움터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성매매여성들의 폭력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실제로 1999년 경기도 기지촌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움터의 조사에서는 매매춘에 놓여있는 동안 20~29세의 여성중 46.8%, 30~39세의 여성 중 72.4%, 40~49세의 여성 중 78.9%, 50세 이상 여성 중 89.5%가 절도, 강도, 성폭행, 구타, 감금 등의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⁷⁾

2) 군산성매매업소 화재사건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는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성매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전환을 이끌었으며,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1) M.Silbert and A.M.Pines. Occupational Hazards of Street Prostitution, & Crimes, Just, Behav. 195(1981)

2) WHISPER Oral History Project, 1987

3) S.B. Satterfield. Clinical Aspects of Juvenile Prostitution. 15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9: 126. (1981)

4) D. Leidholdt. Prostitution: A Violation of Women's Human Rights. 136. (1991)

5) Hunter, S.K. Letter(1994), Patriarchy: notes of an expert witness, Common Courage Press.

6) Baldwin, M.A.(1992), Split at the root: prostitution and feminist discourses of law reform,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7) 새움터(1999), 경기도내 기지촌 지역 매춘여성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새움터.

한국여성단체 연합을 비롯한 15개 단체들⁸⁾은 2000년 10월 26일 군산화재참사의 책임이 있는 포주와 관련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였다. 전국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군산경찰서장, 군산시장, 경찰서와 시의 관련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감금방조, 윤락행위등방조, 유착비리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산지청은 2001년 4월과 6월에 각각 기각과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지만, 고발단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의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유착비리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이를 밝히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군산시, 포주들을 상대로 2000년 10월 26일 국가상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재업소의 인근업소의 성매매여성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유착비리사실에 대한 법적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군산화재참사와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들은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사회적 편견이었음을 드러내었고, 성매매의 억압과 착취의 본성을 밝힐 수 있었다.

우선 우리사회에 성매매여성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성매매는 결코 직업이나 사회적 필요악의 형태로 이해될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착취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성매매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조치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둘째, 단속공무원들과 성매매업소간의 유착비리가 드러났다.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오히려 뇌물을 상납받고 매춘업소와 검은 유착관계를 맺고 이들을 비호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뇌물상납과 성상납을 받고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성매매업소들이 단속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화재사건 이후에도 범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단속공무원들의 직무유기만 아니었어도 이러한 화재참사는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8) 고발단체명: 한국여성단체연합,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 군산여성의전화, 새움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톨릭여성단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여성분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총 15단체

셋째, 성매매문제의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및 유가족들의 국가상대배상청구소송제기는 모두 국가에 성매매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넷째, 여성단체들이 군산화재참사 단일사건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더욱 발전하여,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법률 및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여성단체들은 군산화재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사회에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활동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다.

3)법안논의과정

여성연합은 2001년 4월,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하였다. 참여한 단체 및 전문가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신혜수), 한국여성민우회(양혜경), 한국성폭력상담소(최영애), 한소리회(김미령), 새움터(김현선), 여성장애인연합(조옥), 여성개발원(변화순, 윤덕경), 변호사(이찬진, 이정희) 등이다. 총 15회의 간담회를 열어서 성매매문제를 토론하고 해결방안 및 법률적 대안을 논의하여 법안을 구성하였다.

2. 참고법률

여성연합의 법안을 마련하면서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과 외국의 법률을 참고하였다. 특히 협약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고민하였다.

1) 국제협약

성매매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은 지난 1950년에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체결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1)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인 또는 유괴하는 자, (2)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 행위를 착취하는 자, (3)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4)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또한 이 협약의 제6조에서는 매춘 종사자 또는 종사 용의자들이 특별 등록, 특별 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춘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지난 1979년 UN 총회에서 제정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포함된 매매춘에 관한 조항이다. 이 협약의 제6조에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약 160여개의 비준국에서는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두 협약에 각각 1962년, 1984년에 가입하였으며, 모든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은 아니지만, 매매춘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1995년에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 선언문과 행동강령”에 명시된 매매춘 관련 조항이다. 즉,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 매매춘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특히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하여 각 국 정부가 법률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 인신매매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 및 국가 간, 그리고 국내의 관련기관 간의 협력,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여성들을 피해자로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

1998년에 제정되고 1999년 매매춘금지를 포함시킨 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은 대표적인 매매춘관련법률의 모델이다.

스웨덴은 남녀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진 국가로 간주된다. 정부의 대표는 50%, 의회의원은 40%, 주의회의원은 48%, 지자체는 41%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의 70%가 취업상태이므로 여성의 정치력과 자립도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남

아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매매춘이다.

즉 스웨덴은 매매춘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의 내용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표로 제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매춘·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한다.”⁹⁾

이 법률에서 돈을 지불하는 어떠한 형태의 매매춘이든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최고 6개월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남성과 매춘을 조장하고 알선하는 포주들에게만 해당된다. 매춘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사회복지적 관심의 대상이며, 피해자로서 인식된다. 이것은 매춘여성들이 매매춘의 과정에서 착취당하고 있으며, 약자이기 때문이다.

3. 법안의 방향

- ▶ “윤락”이나 “매매춘”이 아닌, “성매매” 용어 사용
- ▶ 처벌강화 및 불법수익 몰수,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등을 통한 중간알선고리를 근절
- ▶ 다양한 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 ▶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
- ▶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강화
- ▶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 ▶ 국제적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4. 법안의 주요내용

1) “성매매” 용어 사용

이전에 사용했던 “윤락”이나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문제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9)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용어였다. “윤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고, 윤락행위 등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매춘관련 법률에서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관계”로 바라본다. 이러한 태도는 매매춘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이다.¹⁰⁾ 또한 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도덕적인 잣대는 상대남성은 사회적 필요악으로 제외되며, 오로지 성매매 여성들에게만 강요되는 법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사회는 성매매여성을 “윤락여성”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성매매여성들은 비도덕적인 여성”이라는 낙인을 통해 성매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서 환원시킨다. 이러한 견해에서 성매매여성들은 범죄화되거나 선도의 대상이 된다.

“매매춘”이라는 용어사용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법은 “윤락”이나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였다.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2) 중간알선고리 근절

가. 처벌강화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수준으로 형량과 벌금을 강화하였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군산화재참사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장부를 보면 한 여성당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의 화대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화대수입은 빛의 공제, 방값, 옷값, 식대 등으로 모두 포주에게 착취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산매춘업소에만 국한된 착취가 아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착취구조이다. 이렇게 성매매는 포주나 알선자들에게 큰 이득을 준다. 따라서 이 법은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알선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10) Lori Gruen and George E. Panichas(1997), Sex morality and the law, Routledge

다.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성매매업소들이 대부분 겉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해서는 그 업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은 신고자나 자수자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특정범죄신고자로서 보호하며, 불법수익 몰수금액 중 3%이상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3) 다양한 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산업형성매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유입경로와 성매매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범죄를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성매매범죄의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이 법은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강요·광고·모집·유인·권유·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4)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라 이 법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청소년들과 성매매외국인, 그리고 장애인들은 모두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하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5)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보호

가. “성매매된 자”의 개념규정

“성매매된 자”란 이 법에서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다. 성매매된 자에는 “동의여하를 불문한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인신매매·감금·강간·폭행·강요행위·심각한 상해·협박·위계·채무관계·마약사용”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나. “성매매된 자”에 대한 면책조항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의 결과로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책한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채무관계(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다. “성매매된 자”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성매매된 자에 대한 조사나 재판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등 인권보호조항을 강화하였다.

6) 성매매된 자에 대한 지원체계

성매매된 자나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한 긴급보호시설(15일 미만) 및 자립지원시설(6개월 미만, 1회연장 가능),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입퇴소는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시설기간에 상관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성매매행위자중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과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외에도 시설과 상담소의 이용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용을 보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7)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미국 SAGE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성을 사는 사람들의 재범율은 80%에 이르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4500명중 재범율은 단지 2%에 불과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을 사는 자에 대한 교육하는 것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매우 효과가 있다.

이 법은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처벌(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보호처분(성매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연락금지·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교육상담위탁·치료위탁)을 명령한다.

8) 국제적 성매매 방지조항

가. 국제적 성매매 범죄자 처벌

현재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은 국제적 성매매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한다.

나.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강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출국을 명할 수 없고, 통역자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내국인 성매매된 자와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 관련기관의 협력

또한 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부 등과 같은 관련기관들은 범죄수사 및 피해자지원활동과 같은 조치를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이 법은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의 방지와 성매매된 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성매매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성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성매매예방교육·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 강화 및 국제공조 등이다.